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편집 부 □

사료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6. 28일) 이미 지난달 본지에 그 전문이 게재된바 있으며, 이번 7월 20일부로 시행규칙도 개정 공포 되었다(농수산부령 제942호)

양계 경영비의 60~70%가 사료비이기 때문에 배합사료 정책에 양축가로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간 사료정책은 규제일변도에서 많은 부문이 자율화되었고 이 때문에 사료산업이 많은 발전을 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산란계의 경우연평균 80% 이상 산란율을 기록하는 농장이 많아지고 브로일러의 경우에도 사료효율 2.0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일들은 사료공장 상호간의 경쟁에 의한 품질향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합사료 정책이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번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중 직접 관계가 큰 조항을 발췌 소개하고자 한다.

제2조제1호중 “모르모트”를 “기니피그”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애완동물: 고양이 및 애완동물로 사용하는 조류
3. 양식용어류: 양식하는 어류 및 갑각류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농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써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양곡을 절약하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할 경우
 3. 양곡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조업의 허가)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법에 의한 가축의 배합사료(이하 “양축용 배합사료”라 한다)의 제조업허가와 보조사료중 향미제의 제조업허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어류등의 배합사료(이하 “기타 동물·어류용 배합사료”라 한다)의 제조업허가와 향미제를 제외한 보조사료의 제조업허가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축용 배합사료의 제조업 허가신청 또는 보조사료중 향미제의 제조업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⑤항 생략

제8조(허가 또는 등록전 시험·조사등)

제12조(제조업 양도등의 신고)

제18조(사료의 품질관리 및 검사)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과 인원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설과 인원을 갖춘 자로 한다.

③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검사는 현물 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와 사료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된 성분량의 확인
2. 공정규격에의 적합여부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함유여부
4. 중 량
5. 포장이나 용기의 표시사항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취급하는 사료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서류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⑥사료의 수요자가 사료의 검사의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료검사의 시기·요령 기타 검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법 제15조제1항의”를 “법 제15조제3항의”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검사요원
3. 열량과 아미노산·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4.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5. 유해미생물·유해독소의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여부를 검사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

제19조제2항중 “법 제15조제2항의”를 “법 제15조제4항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화학분석방법에 의하되”를 “화학분석방법에 의하되 물리적 방법과 미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20조중 “별표 7에”를 “별표 9에”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조업의 재허가 또는 재등록의 제한)부 칙

- ① (시행일)

② (중전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③ (사료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④ (사료의 품질관리시설 및 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⑤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대상사료의 범위(제9조제1항관련)

(생략)

[별표 4]

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10조관련)

(생략)

[별표 5]

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10조관련)

(생략)

[별표 6] 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제20조관련)

(생략)

[별표 7]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고자 할 때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제16조 관련)

1. 배합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 (1)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2) 사료의 명칭 및 사료의 형태
- (3) 등록성분량
- (4) 사용한 원료의 명칭
- (5) 예방제 및 치료제등의 첨가내용
- (6) 주의사항
- (7) 실중량 kg(톤)
- (8) 사료의 용도
- (9) 제조년월일
- (10) 상호(공장명칭)·공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 (11)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나. 표시 방법

(1) 사료의 명칭은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정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한다.

(2) 사료의 형태는 사료 내용물의 처리된 형태를 표시한다.

개 중 류

가루 : 곱게 가루로 만든 것

[표 1] 단미사료의 범위(제 3 조관련)

구 분	세 분	품 명
식물성	곡 물	1. 옥수수, 보리, 수수, 밀, 호밀, 귀리, 조, 피, 트리티케일, 메밀, 루핀종실 및 두류 2. 위 곡물의 1차 가공품 및 전분(알파화전분을 포함한다)
	곡 물 부 산 물 (강 피 류)	곡쇄, 맥쇄, 밀기울, 말분, 보릿겨, 쌀겨, 탈지강, 옥수수피, 옥수수겨, 수수겨, 조겨 및 두류의 피
	박 류	대두박(전지대두박을 포함한다), 들깨묵, 참깨묵, 채종박, 면실박, 낙화생박, 고추씨박, 아마박, 야자박, 해바라기씨박, 피마자박, 옥수수배아박, 옥수수씨박, 옥수수글루텐, 밀글루텐, 전분박, 주정박, 맥주박, 장유박, 두부박, 커피박, 케이폭밀 및 팜유박
	근 과 류	고구마, 감자, 돼지감자, 타피오카 및 비트
	식품가공부산물	제빵·제과·제면부산물, 조미료부산물, 제당부산물, 두류가공음료부산물, 당밀 및 과실류 가공부산물
	해 조 류	해조분
	섬 유 질 류	목초, 산야초, 나뭇잎, 곡류정선부산물, 임산가공부산물, 볏짚·보리짚 기타 농산물고간류, 화학처리 또는 미생물처리를 한 섬유질사료(박류·전분질 및 식품가공부산물등을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이하 “섬유질사료”라 한다), 균체 또는 효모등을 이용한 발효사료(박류·전분질 및 식품가공부산물등을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발효사료”라 한다.
	제 약 부 산 물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약부산물
동물성	단 백 질 류	어분, 어즙흡착사료, 어류의 가공품 및 동부산물, 우모분, 육분, 육골분, 육즙흡착사료, 혈분, 피혁가공분말, 잠우막, 번데기, 낙농가공부산물, 새우분, 계분, 골뱅이분, 육가공 및 도축부산물(전분질등을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무 기 불 류	골분(전분질등을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골회, 어골분 및 패분
유 지	유 지 류	우지, 돈지, 기타 동물성지방, 레시친, 어유, 식물성유, 혼합유지사료(동물성과 식물성유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
광물성	식 염 류	식염(천일염·가공염을 포함한다)
	인산염 및 칼슘염류	탄산칼슘, 석회석, 인산염류(칼슘·암모니아·나트륨·가리)
	광 물 질 첨 가 물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유황, 가리의 화합염류
	혼 합 광 물 질	혼합광물질(2종이상의 광물질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튀김 : 튀겨서 압착한 것
환제 : 작게 뭉쳐서 환제로 한 것
액상 : 용액으로 된 것

기타 :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

(나) 표시예

사료의 형태 : 액상사료

- (3) 등록성분량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성분 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비(%)로 하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한다.
- (4) 사용한 원료의 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위대로 기재한다. 다만, 다음 내용을 부가할수 있다.
“위 사용원료는 공장사정에 따라 배합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 (5) 예방제 및 치료제등의 첨가내용은 예방제및 치료제등을 첨가한 경우에 사용된 첨가물의 명칭(상품명은 괄호안에 기입할 수 있음)과 사용된 함량,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6) 주의사항은 잘 보이도록 표시하되 내용을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항생제등 휴약기간이 있는 동물약품을 첨가한 때는 그 휴약기간을 명시한다.
- (7) 사료의 용도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8) 실중량은 제품의 실중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포대에는 “kg”, 비포장 대량수송시에는 “톤”으로 표시한다.
- (9) 제조년월일은 제조 포장된 일자를 기준하여 정확하게 표시한다.

2.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생 략)

[별표 8]

사료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인원과 시설기준(제18조 관련)

1. 배합사료

가. 품질관리시설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의 원료 및 제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최소한 조단백질·조섬유·조회분·조지방·칼슘 및 인을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배합사료의 제조업자가 2개이상의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품질관리인원

품질관리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분석기술을 습득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보조사료

가. 품질관리시설

나. 품질관리인원

3. 단미사료

가. 품질관리시설

나. 품질관리인원

[별표 9]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장부 (제20조관련)

(생 략)

[별표 10] 수수료(제21조관련)

(생 략)

이번 시행규칙개정에는 수차례 농수산부 사료과 담당관이 업계대표와 좌담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후 만들어졌다.

새로 개정된 몇가지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14조에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고 과징금이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배합사료의 위반행위는 다음 기회에 곧 양축가에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국고로 회수하기 보다는 피해를 본 양축가에 되돌려 주는 제도로 개선하기를 양축가들은 원하고 있다. 국고회수의 경우 세수확대를 위해 악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도 앞으로는 최근 종계장 등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유해미생물 등에 대한 규제도 따라야 할 것이다.

단미사료의 범위에(별표 1) 목초·산야초·나무잎·벼짚·보리짚·곡류정부산물·임산가공 부산물인 왕겨·톱밥 등과 도축부산물 등 사료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국내 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과거에는 분석실만 갖추도록 하던 것을 교육받은 인원확보도록 의무화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기타 동물 어류용 배합사료 제조에 있어

별도의 시설을 꼭 강요하여 그중의 시설투자를 해야하는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고시될 사료공정규격에는 수입사료에 대한 규정과 토사검사 규정이 명확히 구별될 것이고 배합사료 성분등록도 세분화한것 등 발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초생추·중추·대추용·종계용 사료도 산란계와 육계용으로 나누고 산란초기·중기·말기 사료를 백색계와 유색계로 구분하고 육계사료도 육계전기 중기 후기 1 과 후기 2 로 특수용사료 등 구분되어 최근 산란계에 어느정도 맞는 사료를 만들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 주요골자

가. 사료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배합사료중기타 동물·어류용배합사료 및 향미제를 제외한 보조 사료 제조업의 허가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및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사료의 제조업 허가에 관한 일부 절차를 조정·보완함(영 제 7 조).

나.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사료제조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종전에는 3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허가통지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 7 조제 3 항).

다. 모법의 개정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경매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료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신고를 한 때에는 사료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인수신고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 12 조제 2 항).

라. 현재 사료중 옥수수 가공부산물등을 판매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신고대상사료에 밀기울 및 수입한 배합사료를 추가하여 이러한 사료를 판매하는 자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료의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도록함(영 제14조제 3 호 및 제 4 호).

마. 현재 맥강(보릿겨)·소맥피(밀겨울) 및 탈지강(기름을 짜고 남은 쌀겨)은 사료의 성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료의 성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 사료외의 곡물 및 곡물부산물에 대하여도 사료의 성분등록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15조제 1 호 및 제 2 호).

바.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과 인원을 사료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사료의 제조업자가 2 이상의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공장에 대하여만 품질관리시설과 인원을 갖추면 되도록 함(영 제18조제 1 항 및 별표 8).

사. 사료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다시 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재허가 또는 재등록이 제한되는 범위를 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료가 속하는 배합사료·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에 한정하도록 정함(영 제20조의 2).

아. 종전에 사료의 성분등록 및 검정,기타의 시험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던 것을 사료제조업의허가 또는 등록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금액을 2천원 내지 1만원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 21 조 및 별표 10).
(농수산부 제공)

**추백리 검색을 철저히 하여
종계장에서 추백리를 뿌리 뽑읍시다**

(진단액 구입문의는 752 - 3571 · 2 로)